

#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주요내용

1. 투자신탁의 명칭 : 브이아이 증소형주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1호[주식]

2. 변경시행일 : 2024년 12월 20일

### 3. 변경사유

- ①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갱신
- ② 투자위험등급 변경 : 2등급(높은 위험) → 1등급(매우 높은 위험)
- ③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(표준편차 → 최대손실예상액)
- ④ 실제 수익률 변동성 변경 : 표준편차 21.75% → 97.5% VaR 52.71%
- ⑤ 종류 S, 종류 S-P2 수익증권 : 가입자격 정의 변경
- ⑥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
- ⑦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
- ⑧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- ⑨ 외국원천징수세액 환급내용 삭제

### 4. 변경사항

#### 가. 집합투자규약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제3조 (투자신탁의 명칭 및 종류)	① 내지 ② (생략)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 내지 10. (생략) 11. 종류 S 수익증권 : <b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</b>  12 내지 14. (생략)	① 내지 ② (현행과 같음)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 내지 10. (현행과 같음) 11. 종류 S 수익증권 : <b>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(종류 S-T 및 종류 S-P 수익증권 포함)을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[가입 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]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</b>  12. 내지 14. (현행과 같음)

	<p>15. 종류 S-P2 수익증권 : <b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</b>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</p> <p>16 내지 19. (생략) ④ (생략)</p>	<p>15. 종류 S-P2 수익증권 : <b>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(종류 S-T 및 종류 S-P 수익증권 포함)을</b>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[가입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]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</p> <p>16. 내지 19.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</p>
부칙	<신 설>	이 신탁계약은 202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**나. 투자설명서**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일괄신고서 표지	금융위원회가 ___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b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</b> 실적배당상품으로 ___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금융위원회가 ___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<b>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</b> 실적배당상품으로 ___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투자결정시 유의사항	7. 집합투자증권은 ___ 실적배당상품으로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b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,</b> 특히 「예금자보호법」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<b>은행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</b>	7. 집합투자증권은 ___ 실적배당상품으로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b>보호되지 아니하며,</b> 특히 「예금자보호법」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「 <b>예금자보호법</b> 」에 따라 <b>보호되지 않습니다.</b>
<b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<추 가>	<p><b>2024-12-20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투자위험등급 변경 : 2등급(높은 위험) → 1등급(매우 높은 위험)</li> <li>- 신탁계약 변경 : 종류 S, 종류</li> </ul>

		S-P2 수익증권(가입자격 정의 변경)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-	(업데이트)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 (1) 종류별 가입자격  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 (2) 종류별 가입자격	[판매경로] 온라인슈퍼(S) : <b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</b>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	[판매경로] 온라인슈퍼(S) : <b>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(종류 S-T 및 종류 S-P 수익증권 포함)를</b>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
	종류 S 수익증권 (수수료후취-온라인슈퍼) : <b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</b>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	종류 S 수익증권 (수수료후취-온라인슈퍼) : <b>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(종류 S-T 및 종류 S-P 수익증권 포함)을</b>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[가입 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]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
	종류 S-P2 수익증권 (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) : <b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)가 개설한</b>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하는	종류 S-P2 수익증권 (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) : <b>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(종류 S-T 및 종류 S-P 수익증권 포함)을</b>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

	경우	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[가입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]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__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	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__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<b>2등급(높은 위험)</b>	<b>1등급(매우 높은 위험)</b>
	※ 실제 수익률 변동성(실제 연환산 표준편차 :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) : <b>21.75%</b>	※ 실제 수익률 변동성(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, 97.5% VaR) : <b>52.71%</b>
	(변경전) [ 위험등급 기준표(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) ]	(변경후) [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(97.5% VaR 모형 사용) ]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. 환매	<b>&lt;기업공시서식 반영&gt;</b>	환매 가능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-	<b>(업데이트)</b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	다만,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. (이하 그림)	<b>&lt;삭 제&gt;</b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	[분리과세 한도] <b>1,200만원</b> (공적연금소득,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,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) - 연금소득이 <b>1,200만원</b>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__ 선택 가능함. (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)	[분리과세 한도] <b>1,500만원</b> (공적연금소득,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,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) - 연금소득이 <b>1,500만원</b>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__ 선택 가능함. (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하며, 분리과세 기준 금액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상향적용)
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	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- 다만, 연금 수령 시에도 사적연금액(퇴직연금+개인연금)이 연간 <b>1,200만원</b> 이하인 경우 「분리과세」로 선택 가능하며, 연금소득이 <b>1,200만원</b> 초과하는 경우에 __ 선택 가능함. (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)	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- 다만, 연금 수령 시에도 사적연금액(퇴직연금+개인연금)이 연간 <b>1,500만원</b> 이하인 경우 「분리과세」로 선택 가능하며, 연금소득이 <b>1,500만원</b> 초과하는 경우에 __ 선택 가능함. (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하며, 분리과세 기준금액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상향 적용)
--	--	--

<b>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b>		
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-	(업데이트)
<b>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b>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연결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 규모	-	(업데이트)

**(변경전)**

**[ 위험등급 기준표(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) ]**

등급	1등급 (매우 높은 위험)	2등급 (높은 위험)	3등급 (다소 높은 위험)	4등급 (보통 위험)	5등급 (낮은 위험)	6등급 (매우 낮은 위험)
표준편차	25%초과	25%이하	15%이하	10%이하	5%이하	0.5%이하

**(변경후)**

**[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(97.5% VaR 모형 사용) ]**

등급	1등급 (매우 높은 위험)	2등급 (높은 위험)	3등급 (다소 높은 위험)	4등급 (보통 위험)	5등급 (낮은 위험)	6등급 (매우 낮은 위험)
97.5% VaR	50% 초과	50% 이하	30% 이하	20% 이하	10% 이하	1% 이하

- 주1) 이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.
- 주2) 과거 3년 일간수익률에서 2.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( $\sqrt{250}$ )를 곱해 산출
- 주3) VaR(Value at Risk)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용 위험 측정수단입니다. 상기 표상 VaR값 ○○%의 의미는 펀드의 과거 3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 시 최대 ○○%의 손실(신뢰구간 97.5%)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.

**끝.**